

# 예산총칙

## 2024년도 본예산

제1조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회 계 명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계	914,872,870	27,446,184
일반회계	906,272,498	27,188,174
특별회계	8,600,372	258,010
의료급여기금	1,100,000	33,000
건축안전전	290,363	8,710
주차장	7,210,009	216,300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2024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없다.

제4조 2024년도 계속비 사업은 없다.

제5조 2023년도 예산 중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6조 예비비는 다음과 같다.

### 1. 일반회계

- 일반예비비: 8,835,617천원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000,000천원

### 2. 특별회계

- 건축안전특별회계: 17,000천원
- 주차장특별회계: 72,100천원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5,800,000천원으로 한다.

제8조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각 비목 내에서 서로 이용할 수 있다.

1.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재해대책 및 복구비

제9조 회계연도 중에 통보되는 보조금, 교부금, 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다음 연도 예산안 의회 제출 후 교부된 사업비의 명시이월 포함)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